

## 2026년 제2회 사천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

2026년 제2회 사천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2026년 4월 8일  
사천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

임용분야	임용직급	임용인원	근무부서	근무기간	비고
일반행정	지방한시임기제 7호	1명	의회사무국	2026. 5 ~ 2027. 9. 2.	주35시간

※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라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며, 육아휴직 공무원의 복직 시기 등 사유 발생 시 근무기간 단축 가능

### 2. 주요 업무

임용분야	주요업무
일반행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회의장 녹음파일 생성 및 회의록 작성·관리</li><li>본회의 및 위원회 진행 보조</li><li>그 밖에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업무</li></ul>

### 3. 법령 근거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나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3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다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8조의16(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)
- 라.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 (행정안전부 예규)
- 마.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- 바. 「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

## 4. 응시 자격

가. 공통사항(기준일: 면접시험 예정일)

- 거주지: 제한없음
- 성 별: 제한없음(단,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)
- 연 령: 18세 이상(2008. 12. 31. 이전 출생자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)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### □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□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   -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   -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    - 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    - 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    - 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    - 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 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
□ **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**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조항을 통해 확인

나. 자격요건(기준일: 면접시험 예정일)

임용분야	자 격 요 건
<p><b>일반행정 (한시임기제 7호)</b>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4.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p><b>[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, 국회, 지방의회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대학·대학원(부설 연구기관 포함), 연구기관, 민간기업 등에서 일반행정·법무·예산·회계관리·서무 경력</li> </ul>

### < 유의사항 >

- ※ 경력증명서 상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5항)
-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(관련 경력 필히 기재,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)

## 5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가. 근무시간: 1일 7시간, 주 35시간 근무

나. 보 수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29조의4(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월액)  
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30조의4(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)에 따라  
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

구분	임용직급	근무조건	봉급액		비 고
			봉급기준액	보수산출내역	
일반행정	한시임기제 7호 (7급 상당)	주35시간 (1일 7시간)	2,548,800원	2,548,800원*35/40시간 <b>=2,230,200원</b>	

※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 봉급액으로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

다. 봉급 외 수당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지급  
라.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 가입 희망 시  
가입 가능 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# 6. 선발(시험) 방법

가. 1차 시험: 서류전형

○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

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
나. 2차 시험: 면접시험(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)

○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·중·하로 종합평가

-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‘중’, ‘하’의 개수와 관계없이 ‘상’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(‘상’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‘중’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, 상기 방법에도 불구하고 동 순위가 나올 경우 직무분야 근무 경력 기간이 많은 자로 선발)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, 임용된 후 의원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면접점수 공개: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·중·하의 개수 공개(단, 평가요소별 상·중·하는 비공개 대상)

## 7. 시험 일정

시험공고	응시원서 접수	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(예정)	2차 면접시험(예정)	최종합격자 발표
2026. 4. 8. ~ 4. 20.	2026. 4. 16. ~ 4. 20.	2026. 4. 22.	2026. 4. 28.	2026. 5월경

가.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※ 임용인원보다 응시인원이 적거나 같을 경우 재공고 예정

나.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

- 사천시의회 누리집(<https://council.sacheon.go.kr>) 「의회소식-공지사항」에 공고

## 8.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

가. 접수일시 및 방법

○ 접수기간: 2026. 4. 16.(목) ~ 4. 20.(월) 09:00 ~ 18:00

[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]

○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: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

※ 등기우편 접수를 할 경우 사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(☎055-831-3940)으로 발송 후 반드시 전화 알림(봉투 겉표지에 “응시원서 재증” 표기)

※ 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하며,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교환하여 동봉하여야 함

나. 접 수 처: 사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(3층)

○ 주소: 우(52539)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사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

다. 제출서류

구 분	내 용	비 고
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	▶ 목록별로 제출 여부 표시	[서식 1]
② 응시원서 1부	▶ 응시수수료 - 7급(7호) : 7,000원 ▶ 방문접수: 사천시 수입증지(사천시청 1층 민원지적과) ※ 정부수입인지 및 타 지자체 수입증지 불가 ▶ 우편접수: 우체국 통상환증서	[서식 2]
③ 이력서 1부	▶ 이력서 상의 경력과 자격은 경력증명서, 자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 ※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기재 금지	[서식 3]
④ 자기소개서 1부	▶ A4 1매 이내 ※ 성명, 나이, 학교명, 출생지,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 기재 금지	[서식 4]
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	▶ A4 4매 이내 ▶ 응시 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, 향후 계획, 발전 방안 등을 자유롭게 기술	[서식 5]

구 분	내 용	비 고
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	▶ 서식 6	[서식 6]
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	▶ 서식 7	[서식 7]
⑧ 주민등록초본 1부	▶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▶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[서식 8] 제출 시 같음 가능	[서식 8]
⑨ 경력(재직) 증명서 1부 (원본 또는 사본)	▶ 발행기관 직인 날인, 발급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기재 ▶ 경력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,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(담당업무, 직위, 근무시간, 인사담당자 날인)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※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인정하지 않음 ▶ 전일근무(1일 8시간)가 아닌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※ 경력 인정방식 예사: 1일 4시간(주 20시간) 1년 근무 = 전일제 6개월 근무로 인정 ▶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 및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, 반드시 보수내역 및 근무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	[서식 9]
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(경력,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)	▶ 국민건강보험(www.nhis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▶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전체기간 발급	
⑪ 응시 분야 관련 자격증(면허증) 사본 1부 (원본 지참)	▶ 유효기간: 면접시험일 기준 ▶ 갱신 또는 재발급 사실이 있는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된 자격증을 제출	해당자에 한함
⑫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(원본 지참)	▶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(학위증서) 모두 제출	해당자에 한함
<p>※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 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</p> <p>※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</p>		

## 라.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,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)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## 9. 기타 참고사항

- 가.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경력·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나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사천시의회 누리집 「의회소식-공지사항」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문의처: 사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(☎055-831-3940)